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93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김재섭 · 엄태영 · 조은희
이성권 · 한지아 · 유영하
서천호 · 강대식 · 김장겸
안철수 · 강명구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 법에는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 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

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를 “등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의 대상지역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⑦ ----- -----<u>등에</u>----- -----. <u>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u>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의 대상지역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